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라움케어주간보호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이용을 돕는 한편, 관리업무의 제반질서를 유지하여 업무를 원활히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기간)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 ④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① 신체활동지원
- ② 일상생활지원
- ③ 정서지원
- ④ 인지활동지원
- ⑤ 여가활동지원
-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 ⑦ 지역사회연계

제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등급별 월 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추가 산정	2,537,040	2,291,740	1,782,840	1,644,720	1,412,400	

1.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 금액으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2. 장기요양등급별 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3.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1,2등급은 월 한도액 1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되며, 3,4,5 등급은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된다.

②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1일당 급여비용(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0,650	37,630	34,740	33,160	31,580	31,58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4,490	50,470	46,590	45,000	43,400	43,4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7,770	62,780	57,960	56,380	54,780	54,78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4,660	69,160	63,900	62,290	60,710	54,780
13시간 초과	80,060	74,170	68,520	66,930	65,350	54,780

1.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3.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③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기타 의료수급권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0%

④ 비급여 항목

비급여 청구 항목	금액	비고
식사재료비	3,800원	*(1식) 기준으로 계산
간식비	1,000원	*(1일) 기준으로 계산
아·미용비	0원	*(1개월) 기준으로 계산

제5조(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 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②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③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④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 ⑤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 ⑥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 ⑦ 그 밖에 기관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 의무

제6조(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② 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3.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